

산림생태원의 시설(제18조제1항 관련)

구분	시설의 종류
교육·체험·탐방 시설	○ 회귀·특산식물원, 시험전시림, 생태복원숲 등 전시시설 ○ 숲체험관, 숲생태교육장, 산림생태관찰원, 습지관찰원 등 교육·체험시설 ○ 생태탐방로, 자연관찰로 등 탐방시설 ○ 식물해설판, 숲해설판, 식물표찰 등 이용자 편의시설
시험·연구시설	○ 연구실, 증식시설, 온실, 양묘장 등
위생시설	○ 급수대, 화장실, 오물처리장, 오수정화시설 등
편익시설	○ 주차장, 방문자 안내센터, 관리사(管理舍), 안내관 등 산림생태원의 운영·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

- 주 1) 산림생태원의 시설은 산림생태계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지 등의
형질변경을 최소화하여야 한다.
- 2) 생태숲의 입지 여건, 기능 등을 고려하여 산림생태원의 시설 종류를 일부 조정
할 수 있다.